

대한민국

인신매매퇴치감시국

2018 년도 인신매매보고서

1 등급

대한민국: 1 등급

대한민국(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정부는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은 1 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전 보고 기간과 비슷한 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확인해 지원을 제공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조사를 늘렸으며, 상업적 성행위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노동착취 인신매매 문제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않았다. 노동착취 인신매매의 조사 및 기소 건수는 감소했고, 정부의 식별노력 부족으로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처벌받고 추방당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안

형법 31 장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사범을 수사·기소하고 유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특히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해 강화해야 하며,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는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해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약취, 매매행위, 강제력 혹은 감금이 있어야만 ‘인신매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법집행 공무원, 검찰, 사법 공무원이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개인, 장애인, 각종 비자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어선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전예방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침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성매매 및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공식지침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성매매 및 노동착취 인신매매 방지노력을 총괄 담당할 정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인신매매를 당한 직접적 결과로 인해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사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속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착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노력에 길잡이가 되도록 인신매매를 구체적 대상으로 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잠재적 인신매매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아동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유인하는 내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고용계약을 확인하고 스폰서 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 발급한 호텔·유흥 비자와 관련된 인신매매의 취약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사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속해야 한다.

사범 처리

정부는 법 집행 노력을 계속했다. 형법 제 31 장은 성매매 및 노동착취 인신매매를 불법화했으며, 인신매매 사범을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형량은 충분히 엄격한 수준으로, 성매매 인신매매와 관련하여서는 강간 등 다른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형량에 해당한다. 2017 년,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된 448 건(2016 년 562 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327 명(2016 년 426 명)을 기소하고 그 중 127 명(2016 년 127 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경찰은 장애인 피해자와 관련된 강제노동 3 건을 수사했다. 2017 년,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어떤 기소에도 착수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 42 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3 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집행 당국은 인신매매 방지 전담팀을 두지 않았다. 정부는 성적 인신매매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있어 외국정부들과 협력하고, 검찰 및 법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적 인신매매 문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해 많은 교육을 연중 실시했으나, 노동착취 인신매매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인신매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관성이 없어서 약취, 매매행위, 무력 행사 또는 감금 등이 있어야만 인신매매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널리 퍼져있었다. 그 결과, 법집행당국과 검찰은 처벌이 덜 엄격한 법조항에 근거해 대부분의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했다. 한 아동과의 상업적 성행위에 연루된 경찰관 1 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를 받아, 존스쿨 40 시간 이수 및 1 천 5 백만원(14,07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피해자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외국인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77 명(2016 년의 경우 82 명)을 식별하여 지원을 제공했다. 내·외국인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통계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2017 년에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3 명을 확인했으며, 성적 인신매매나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 7,392 명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2013 년에 수립된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계속 사용하고 배포했지만, 노동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은 수립하지 않았다. 2016 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된 식별 지침을 정부기관들에 배포했지만, 어떤 기관도 보고기간 말까지 이 지침을 집행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신매매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들을 법 집행기관과의 첫 접촉 시점부터 보호·지원 시스템에 인도하는 단계까지 책임졌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공에 관한 공식 지침을 발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 국적 어선에서의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다른 유형의 범죄 피해자들에 더해 성적 인신매매 여성 피해자들을 돕는 96 개 시설을 지원했다. 이 시설들은 상담 서비스, 숙소, 교육, 재활지원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 시설들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중 상담이나 의료 및 법률지원과 같은 일부 서비스를 남성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부는 장애가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와 숙소 31 곳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정부 서비스의 질이 남성,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비정부기구들은 정부관리들이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피해자중심 접근법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효과적인 식별절차로 인해, 정부 당국은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체포, 구금, 추방했다. 경찰 등 공무원들은 종종 내·외국인 여성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하기보다 범죄자로 취급했다.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통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적 대안을 제공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최장 1 년간 취업이 허가되는 G-1 비자를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G-1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때로는 지원도 제공하지 않고 추방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고기간 동안에 보상을 받았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 서비스 알림, 홍보 캠페인, 이벤트 행사 등을 주관하고, 온라인에서 관련자료를 배포하고, 인신매매 방지 핫라인을 홍보했다.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집행 조사단이 성적 인신매매 대처를 위한 정부노력을 총괄하고 있으나, 보고기간 동안에 모인 적은 없다.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총괄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호텔·유흥(E6-2) 비자 소유자들에 대한 착취를 막고자, 정부는 비자 소유자들에게 권리와 노동법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는 식당, 술집, 사창가 256 곳(2016년 101 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불법 유흥업에 연루된 건물주 323 명을 체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많은 사업장 200 곳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3,069 곳 이외에도, 2 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착취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1,510 곳에서 7,053 건(2016년 3,337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들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위법업체에 대한 기소 여부는 확실치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 42 곳의 재정 일부를 지원해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다. 잠재적 인신매매 범죄를 신고하기 위한 특별 핫라인이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13 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계속 운영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인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핫라인 운영을 계속했다. 인신매매를 특정한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은 없었지만, 정부는 2012년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인신매매 척결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강제노동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성매매 수요를 줄일 목적으로, 정부는 2017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들과 모바일 앱들에 성적 인신매매 및 상업적 성행위 관련 법률에 대한 통지문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학교, 정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들에 매춘 및 인신매매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공항, 기차역, 여행사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의 불법성을 홍보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에서 한국 남성들은 여전히 아동 성매매 관광 수요의 원천이었다. 정부는 해외 성매매 관광에 참여한 한국인 11 명(2016년 4명)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잠재적 성매매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개인 1 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외 파병 전후에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인신매매 개요

지난 5 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성적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처한 성인 남녀와 아동의 송출국·경유국·기착국이다. 한국 여성들은 국내외에서 강제 매춘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한국 여성들은 관광, 취업, 유학 비자로 기착국에 입국하여 안마시술소, 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매춘업체를 통해 강제로 매춘에 종사하게 된다. 유흥업소 업주들이나 악성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들은 매춘을 강요당한다. 신체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한국인 남성들 일부는 착취당하기 쉬운 처지에 놓여 염전이나 축사 등에서 강제노동을 당했으며 언어적·신체적 가혹행위,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로·생활 여건 등에 시달린다. 인신매매범들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착취하며 한국 아동들은 온라인상의 구인을 통한 성적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일부 가출 소녀들은 거처와 생활비에 충당할 돈이 필요해서 성적 인신매매로 내몰린다.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남미 출신의 남성 및 여성이 한국 내에서, 그리고 한국인이 등록, 운항하는 어선 위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이들 지역 출신 여성 중 일부는 강제 성매매를 강요받는다. 외국인근로자,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는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노예로 전락할 취약성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약 40 만 명이 어업, 농업, 축산업, 요식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조건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피지를 비롯한 그 밖의 다른 태평양 항구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처가는 경유국이다. 정부나 선주협회의 소관 밖에서 운항되는 소형 어선에 탑승한 외국인 어부들은 강제노동 등의 착취에 취약하다.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한—대부분이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 출신인—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항구와 미군 기지 주변의 유흥업소에서 강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빌미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 중 일부는 한국에 도착한 후에 강제 성매매나 강제노동을 강요받는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등지에서 아동 성관광에 나서는 한국 남성들도 있다.